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축산자조금 사업 성과평가 근거 마련〉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676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총괄 검토	3
가. 자조금의 개념과 성격	3
나. 축산자조금 및 농산자조금 비교	5
다. 의무축산자조금 및 임의축산자조금 비교	12
2. 토종닭 자조금 설치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	14
3. 축산자조금의 운용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정부의 협력 근거 마련(안 제3조 제4항 신설)	20
4. 자조금의 용도에 사업 성과평가 및 정부 보조금의 차등 지원 근거 마련 (안 제4조제1항제5호 개정 및 안 제31조의2 신설)	28
5. 자조금의 용도에 자조금 거출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추가(안 제4조 제1항제6호 신설)	37
6. 중도매인 등이 의무거출금 대납 시 수납기관에 납부자 인적사항 제공 의무 부여 (안 제18조제3항 신설)	42
7.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 제한 근거 마련(안 제18조의2 신설)	48
8. 의무자조금 운용계획 승인 기한 마련(안 제21조제2항 후단, 제3항 및 제4항 신설)	52
9. 축산자조금의 수급조절 방법 명시(안 제23조의2 신설)	62
10. 통계 및 통계자료 작성·관리 근거 마련(안 제29조의2 신설)	70
11. 농어업경영정보 이용 근거 마련(안 제29조의3 신설)	78
12. 개인정보 부정 사용에 대한 벌칙 및 관리부실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제33조 및 제34조)	8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12. 18.

다. 회 부 일 : 2024. 1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업 및 축산자조금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 소득 및 소비자물가 안정 등을 위한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에 대한 법적 근거와 자조금 운영 방식, 성과평가 등 관리·운영체계가 다소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농산물의 경우에는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율적인 조절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 조절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자조금을 수급 안정을 위한 축산물의 수매·비축 또는 가축의 출하조절 등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농수산물자조금은 효율적인 예산 배분 및 관행적인 사업 추진 방지를 위해 성과평가를 통해 보조금을 차등 배분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성과평가 및 보조금 차등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음.

이에 축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

축산자조금을 축산물의 수매·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출하조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자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2년마다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여 정부 보조금 차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더불어, 축산자조금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조금의 자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 매년 수립하는 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사업승인 기한을 지정하고, 축산업자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 작성 등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자조금의 개념과 성격

자조금이란 학설 상 광의의 개념으로는 이익집단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여러 형태의 ‘자조적 재원’을 의미함.

협의의 개념으로는 법정규정 또는 집단의 결의로서 의무적 또는 자발적으로 부과 징수하여 특정 목적에 사용하는 ‘제도적 기금’을 의미함.¹⁾

자조금의 법률 상 정의²⁾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등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되는 자금임

자조금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법화된 특수기금’이라고 결정한 바 있음.(2008.10.31., 2006헌바1 전원재판부).

자조금의 재원 조달 방식은 기금과 유사하나, 조성·운용의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1) 한국낙농육우협회, “자조금의 의의와 성격”, 「월간 낙농육우」, 1990, 마창모 외, 「원양산업 자조금 조성방안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2.

2)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축산자조금(畜産自助金)”이란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등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 자조금 및 기금 비교 】

자조금(축산자조금법)	기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축산자조금의 설치) ① 축산단체가 축산자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축산물별로 의무축산자조금과 임의축산자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제5조(의무자조금의 설치) ①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설치 이유, 자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6조(의무자조금의 자원) 의무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의무거출금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영업자, 「사료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제조업자 등 축산 관련 영업자의 지원금 4. 의무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금	제54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한다. 제5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제9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2025. 1. 24.) 제출

나. 축산자조금 및 농산자조금 비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자조금으로는 축산자조금과 농산자조금이 있고, 양 자조금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첫째, 축산자조금의 경우 자조금(의무·임의)의 설치 주체가 ‘축산단체’인 반면, 농산자조금은 자조금(의무·임의)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비영리법인인 자조금단체가 농산자조금 설치의 주체임.

둘째, 축산자조금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자조금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소고기의 경우에만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고, 그 외의 축산물에 대하여는 하나의 자조금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산자조금의 경우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하나의 품목을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농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품목을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음.

셋째, 축산자조금 및 농산자조금의 재원을 위해 농식품부가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함.

다만, 농산자조금은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산자조금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3)에 따라, 의

무·임의 자조금단체 모두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2년마다 받고 그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또한, 상기 성과평가 등을 고려하여 각 자조금단체에 대하여 출연금 또는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음.

그러나, 축산자조금의 경우 농산자조금과 같이 자조금 사업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각 자조금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실시된 적이 없는 실정⁴⁾이고,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경우에도 성과평가 등에 따른 차등지급 방식이 아닌, 일률적 지급 방식으로 실시⁵⁾되고 있음.

넷째, 의무자조금의 주요 재원인 의무거출금은 축산자조금과 농산자조금 모두 해당 자조금 관련 농가의 납부가 법적 의무사항임.

법적 의무사항인 의무거출금 납부가 원활히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자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지장이 있는바,

3) 「농산자조금법」

제31조(자조금 운용 평가) ① 의무자조금단체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2년마다 받고 그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자조금의 용도로 “자조금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평가의 실시와 관련한 별도의 의무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실시된 바 없음.

5) 연간 약 200억원의 예산 내에서 한우의 경우 한·미/한·영연방 FTA 대책 등으로 가장 많은 약 9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한돈·우유 의무자조금은 50억 수준, 오리·육우 등 규모가 작은 의무자조금은 10억 수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축산자조금법」 및 「농산자조금법」 모두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하여 300만원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한편, 「농산자조금법」에서는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농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축산자조금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섯째, ‘의무농산자조금’의 경우 「농산자조금법」 제21조의2⁶⁾에 따라, 해당 농산물의 농산업자 또는 제12조⁷⁾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⁸⁾가 ① 경작 및 출하신고, ② 품질·중량

6) 「농산자조금법」

제21조의2(생산·유통 자율조절)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생산·유통 자율조절”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경작 및 출하 신고
2.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규격 설정
3. 수출 등 단일 유통조직 지정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사항

②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7) 「농산자조금법」

제12조(대의원회) ① 농수산업자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의무자조금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등록·선거 및 대의원의 선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 시장출하규격 설정, ③ 수출 등 단일 유통조직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축산자조금의 경우 「축산자조금법」에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여섯째, 「농산자조금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 및 농수산업자 현황 등을 포함한 통계자료(이하 “통계등”이라 한다)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관련 통계등을 제공도록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28조).

또한, 농산자조금단체가 대의원 선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⁹⁾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목 농산업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및 재배면적을 말한다)를 농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농식품부장관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음(동법 제28조의2).

그러나, 축산자조금의 경우 「축산자조금법」에 상기 ① 통계자료, ②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8) 의무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농산자조금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관리위원회 「농산자조금법」

제13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의무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 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축산자조금법」 및 「농산자조금법」 비교 】

조문(농산자조금법 기준)	축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1조(목적)	축산업 발전	농어업 및 국가경제 발전
제2조(정의)	축산단체가 축산자조금 설치	자조금단체가 농산자조금 설치 *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비영리법인
제3조(농수산물자조금의 설치)	한우와 육우 분리 설치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품목을 분리하여 설치 가능
제4조(자조금의 용도)	유사	
제5조(출연 및 지원)	-	성과평가에 따른 차등지급 근거 마련
제6조(의무자조금의 설치)	축산단체가 의무자조금 설치	자조금단체가 의무자조금 설치
제7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유사	
제8조(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한도)	축산물 가격의 1000분의 5 이내	농산물 가격의 100분의 1 이내
제9조(총회의 설치 등)	제10조 대의원회의 설치, 제11조 대의원회의 구성과 유사	의무자조금단체에 총회를 둠 (농수산업자가 150명 이상인 경우 대의원회 운영으로 같음)
제10조(총회의 운영)	제12조 대의원회의 운영과 유사	총회의 운영방법을 정함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3조 대의원회의 직무와 유사	총회의 의결사항을 정함
제12조(대의원회)	-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 운영 가능
제13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설치)	유사	
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유사	
제15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제22조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과 유사	대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 등으로 해임 가능
제16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업무)	제16조 관리위원회의 직무와 유사	의무거출금 수납, 관리 및 집행업무를 수행
제17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제21조 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와 유사 *단, '10년 전부개정 과정에서 의무자조금은 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기준 : 축산단체가 관리)	자금운용계획안 농식품부 장관 승인 필요 등
제18조(사무국의 설치 등)	제17조 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설치 등과 유사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여 사무국 설치 가능
제19조(의무거출금의 납부)	제18조 의무거출금의 납부와 유사	영세 업자는 납부의무 면제 가능
제19조의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	의무거출금 미납부자에 대한 지원제한 근거
제20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유사	
제21조(의무자조금의 폐지)	유사	

조문(농산자조금법 기준)	축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21조의2(생산·유통 자율조절)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우리부 승인을 받아 품질, 중량 등 시장출하규격 등 설정 가능
제22조(임의자조금의 설치)		유사
제23조(임의자조금의 재원)		유사
제24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유사
제25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유사
제26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유사
제27조(임의자조금의 폐지)		유사
제28조(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관리 등)	-	농산업자 현황 통계자료를 관리하고, 자조금단체 등에 통계를 제공
제28조의2(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	자조금단체의 농어업경영정보 이용 권한
제29조(과오납금의 환급)		유사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유사
제31조(자조금 운용평가)	-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운용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
제32조(지도·감독)		유사
후략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2025. 1. 24.) 제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안은 「농산자조금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축산자조금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과 축산자조금의 운용상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규정들을 마련함으로써 축산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도모하려는 취지임.

참고로, 현행 농산자조금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품목 대표조직으로서의 자조금의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 자조금단체의 법적 성격과 회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

로 하는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¹⁰⁾된 바 있음.

10)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제2205471호)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제2205614호)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제2205702호)

다. 의무축산자조금 및 임의축산자조금 비교

축산자조금은 현행법 상 축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의무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설치된 축산자조금인 ① 의무축산자조금과 축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임의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설치된 ② 임의축산자조금으로 구분됨.

① 의무축산자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축산단체는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음.

이후 현행법 제8조제1항¹¹⁾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

② 임의축산자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축산단체는 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축산업자의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의무축산자조금 품목(7개)으로는 한우, 한돈, 우유, 계란, 닭고기, 오리, 육우가 있고, 임의축산자조금 품목(2개)으로는 사슴과 양봉이 있음.

11)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대의원의 선출 등) ①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 등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등을 선출구역(이하 “선출구”라 한다)으로 하여 축산업자 중에서 대의원을 선출한다. 이 경우 축산단체가 대의원의 선출에 지출한 비용은 의무자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의무축산자조금 및 임의축산자조금 비교 】

구분	의무축산자조금	임의축산자조금
정의	축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의무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설치된 축산자조금	축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임의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설치된 축산자조금
설치	농식품부장관에게 설치계획서 승인을 받은 후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	농식품부장관에게 설치계획서 승인을 받은 후 축산업자의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대의원회	설치	미설치
사무국	설치	미설치
운용 및 관리 주체	관리위원회	축산단체
품목	한우, 한돈, 우유, 계란, 닭고기, 오리, 육우 (7개)	사슴, 양봉 (2개)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2025. 1. 24.) 제출

2. 토종닭 자조금 설치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

가.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현행법 상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만 설치할 수 있으나, 소고기의 경우에는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닭고기의 경우에도 육계와 토종닭을 구분하여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축산자조금의 설치) ① 축산단체가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축산물별로 의무축산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과 임의축산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제3조(축산자조금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 -----, ----- ----- <u>육우</u> 를, 닭고기의 경우에는 육계와 <u>토종닭</u> -----.
③ 제2항에 따라 자조금을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

현행	개정안
	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제24조에 따라 임의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가 건전하고 자율적으로 자조금을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토종닭은 일반 육계와 맛과 크기, 식감 등이 다르고 토종닭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낮아 육계와 다른 소비홍보 필요성 등 특수성이 있고, 닭고기자조금이 '19년부터 단체 간 갈등으로 거출률이 낮은 등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토종닭자조금 신설 허용 필요성이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2) 축산물 관련 단체 협의회

별도 의견 없음.

3) 토종닭 협회

토종닭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자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자조금을 구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다. 검토 의견

현행법 제3조제2항에서 소고기를 제외한 나머지 축산물에 대하여 각각 하나의 자조금만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닭고기의 경우에도 닭고기자조금 1개만 설치·운영되고 있음.

닭의 경우 일반적으로 육계와 토종닭으로 구분되며, 토종닭의 경우 한우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사육되어 온 닭의 품종으로, 1960년대 이후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육계와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토종닭은 일반 육계와 비교 시 맛·크기·식감, 성장속도·사육형태, 소비방식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토종닭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아 육계와 다른 홍보 정책의 필요성이 있는바, 산업적 특성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

【 토종닭 및 육계 비교 】

구 분		토종닭	육 계
품 종		소래, 한협3호, 우리맛닭	코브, 로스, 아바에이커
유통형태		산닭유통 30%(재래시장) 냉장유통 70%	냉장유통
사육농가		161호	1,059호
조사시점 사육두수		4,991천마리('24.12월 기준)	68,223천마리('24.12월 기준)
주요경로		일반음식점 28% 대규모 중소마트 25% 전통시장, 가든형식당 각16% 등	프랜차이즈 37.3% 일반음식점 11.89% 단체급식소 11.7% 등
사 육 형 태	사육일	70~90일 사육	31~35일 사육
	평균체중	1.8~ 2.3kg	수닭: 1.2~ 1.4kg 암닭: 1.1~ 1.7kg
	회전수	연 3.5회전	연 6회전
외모		다리가 길고 몸매가 날렵함, 가슴살이 얇고 날씬함	허벅지가 두껍고 다리가 짧음 가슴살이 두꺼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2025. 1. 24.) 제출

또한, 현재 토종닭은 연간 약 9천만~1억 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바, 대한양계협회·육계협회¹²⁾ 외에 토종닭협회가 별도로 존재¹³⁾하여 토종닭 생산자 이익 증대 도모 활동 등을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임.

12) 양계협회(1973.6.14.~), 육계협회(1987.6.10.~)

13) 토종닭협회(2009.1.16.~)

【 '24년 토종닭 사육현황 】

(단위 : 만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 합계
2022년	654	676	801	1,113	1,300	1,175	830	684	666	694	723	756	10,072
2023년	764	780	841	1,073	1,194	1,127	865	669	602	587	578	577	9,657
2024년	612	696	801	1,091	1,270	1,137	716	595	575	581	579	585	9,238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2025. 1. 24.) 제출

아울러, 닭고기자조금의 경우 '19년부터 양계·육계·토종닭 협회 간 갈등으로 '22년까지 낮은 거출률(6.4%)이 지속되는 등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¹⁴⁾임에 따라,

토종닭을 별도의 자조금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지속되고 있음.

【 닭고기자조금 운영 차질 경과 】

- 닭고기자조금은 다른 자조금과 달리 이해관계가 다른 **4개 단체**(양계·육계·토종닭협회, 농협), **계열사 및 농가 참여** 등에 따른 **이해 상충***
 - * 육계협회는 회원 계열사(13개사)의 자체 홍보사업 운영으로 중계감축, 비축 등 수급 조절 중심으로 운영 희망, 양계협회는 소비촉진 중심, 토종닭협회는 별도 자조금 신설 희망 등 단체 간에 입장 차가 뚜렷함
- **육계협회 회원 계열사(13개) 외에 나머지 계열사(53개)와 비계열 농가의 거출금 납부 미흡**에 따른 **무임승차** 문제로 **육계협회 회원사 중심의 자조금 폐지 요청*** 및 **대의원회 안건 상정**
 - * 육계협회는 참여단체별 조성기여도를 고려하지 않는 예산분배에 불만, 참여 거부
- 대의원회 개최 결과 **폐지 안건은 부결**되었으며, 이후 자조금 **정상화를 위한 협약서, 정상화 운영 합의서** 등을 통해 **자조금 정상화를 도모**하였고 '22.9월부터 **거출이 재개**됨
 - * 닭고기자조금 거출률 : ('22) 6.4% → ('23) 65.5% → **('24) 73.9%**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2025. 1. 24.) 제출

14) 과거에는 (사)대한양계협회(육계 + 산란계)가 가금(닭) 생산자(농가)를 대표하는 단체였으나, 이후 축종 간 특성 차이 등으로 개별 축종 단체(육계, 토종계)가 설립되었고, 축종 간 특성 및 소비 대상 등이 달라 닭고기 자조금 운용이 원활하지 않았음.

이와 같이 토종닭과 육계 간 ① 소비방식과 산업적 특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 ② 이에 따라, 자조금의 사용 목적 및 홍보 대상 등이 상이하여 닭고기 자조금의 운영에 지속적으로 차질이 있었던 점, ③ 소고기의 경우에도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여 각각 자조금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육계 자조금과 토종닭 자조금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토종닭과 육계 협회 간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 각각의 자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독자적 자조금 운영을 위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3. 축산자조금의 운용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정부의 협력 근거 마련 (안 제3조제4항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개정안은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제24조에 따라 임의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가 건전하고 자율적으로 자조금을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의무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3조(축산자조금의 설치) <u><신 설></u> 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임의자조금의 설치) 축산단체가 임의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축산업자의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3조(축산자조금의 설치) ④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제24조에 따라 임의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가 건전하고 자율적으로 자조금을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u>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민의 자조조직 육성 및 자율적 활동 보장의 측면에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축산단체에서 자조금을 건전하고 자율적으로 운용·관리하도록 정부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2) 축산물 관련 단체 협의회 및 축산자조금 단체

개정안에 따라, 자조금 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개정안에 동의함.

다. 검토 의견

의무자조금의 설치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5조제1항¹⁵⁾은 축산단체가 농식품부장관에게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의무자조금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8조제1항¹⁶⁾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1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무자조금의 설치) ①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의무자조금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축산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실시된 투표의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투표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6)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대의원의 선출 등) ①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 등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등을 선출구역(이하 “선출구”라 한다)으로 하여 축산업자 중에서 대의원을 선출한다. 이 경우 축산단체가 대의원의 선출에 지출한 비용은 의무자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의자조금의 설치의 경우 동법 제24조에서 축산단체가 농식품부장관에게 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축산업자의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은 절차로 설치된 의무자조금 및 임의자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의무자조금은 현행법 제14조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가 의무자조금을 운용·관리하고 있음¹⁷⁾.

임의자조금의 경우 동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축산단체가 운용·관리하고 있음.

【 의무축산자조금 및 임의축산자조금 비교 】

구분	의무축산자조금	임의축산자조금
정의	축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의무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설치된 축산자조금	축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임의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설치된 축산자조금
설치	농식품부장관에게 설치계획서 승인을 받은 후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	농식품부장관에게 설치계획서 승인을 받은 후 축산업자의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운용 및 관리 주체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축산단체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2025. 1. 24.) 제출

17)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의무자조금은 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개정안은 의무자조금의 운용·관리 주체인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임의자조금의 운용·관리 주체인 제24조에 따른 ‘축산단체’가 건전하고 자율적으로 자조금을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장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마련하려는 것임.

축산자조금의 재원은 ① 각 축산농가로부터 의무 또는 임의로 납부 받은 거출금과 ② 농식품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으로 구성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모든 자조금에서 거출금 예산이 농식품부의 보조금에 비해 그 비중이 높은 상황임(의무자조금의 경우 거출금 예산이 67.2%, 정부 보조금이 32.8%이고, 임의자조금의 경우 거출금 예산이 52.4%, 정부 보조금이 47.6%)

【 자조금 자원 중 거출금 및 보조금 현황 】

구분			'19	'20	'21	'22	'23	5개년 평균(%)
의무 자조금	한우	거출금	14,974	15,419	15,606	17,007	18,928	16,387(53.7%)
		정부보조	9,425	9,425	9,325	10,279	32,161	14,123(46.3%)
		계	24,399	24,844	24,931	27,286	51,089	30,510
	한돈	거출금	19,360	19,279	19,282	20,189	20,627	19,747(77.8%)
		정부보조	5,438	6,150	5,850	5,350	5,350	5,628(22.2%)
		계	24,798	25,429	25,132	25,539	25,977	25,375
	우유	거출금	6,286	6,047	5,995	7,697	7,661	6,737(57%)
		정부보조	5,167	5,177	5,014	5,003	5,100	5,092(43%)
		계	11,453	11,224	11,009	12,700	12,761	11,829
	계란	거출금	625	898	946	866	793	826(82.6%)
		정부보조	247	237	385	-	-	174(17.4%)
		계	872	1,135	1,331	866	793	1,000
	닭고기	거출금	297	92	187	312	1,197	417(92.7%)
		정부보조	96	67	-	-	-	33(7.3%)
		계	393	159	187	312	1,197	450
	오리	거출금	1,148	1,018	1,346	1,613	1,498	1,325(51.8%)
		정부보조	800	1,170	1,310	1,440	1,440	1,232(48.2%)
		계	1,948	2,188	2,656	3,053	2,938	2,557
	육우	거출금	957	1,087	1,144	1,236	1,243	1,133(54.6%)
		정부보조	884	978	912	962	970	941(45.4%)
		계	1,841	2,065	2,056	2,198	2,213	2,074
임의 자조금	양봉	거출금	157	174	152	142	136	152(54.1%)
		정부보조	110	127	158	129	122	129(45.9%)
		계	267	301	310	271	258	281
	사슴	거출금	144	75	68	70	76	87(50.6%)
		정부보조	108	70	79	90	80	85(49.4%)
		계	252	145	147	160	156	172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2025. 1. 24.) 제출

따라서, 자조금의 재원 중 축산농가가 납부한 거출금의 비중이 농식품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대비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각 자조금 운용·관리 주체(이하 “자조금단체”라 한다)의 자율성도 고려될 필요가 있어 보임.

그런데, 그동안 축산자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농식품부와 자조금단체 간 입장에 차이가 있어 이와 관련된 갈등이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음.

【 관련 기사 】

축단협, "정부 축산자조금 개편안 강행 강력대응 할 것"(전업농신문, 2023.09.07.) 축산관련단체협의회, 6일 정부 추진안 대응방안 논의 개편 강행시, 총 쉼기대회 추진·자조금 폐지도 검토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정부의 축산자조금 개편안과 관련해 축산 생산자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u>정부가 일방적 통행으로 추진할 경우 강경투쟁으로 맞서고 최악의 경우 자조금 거출 중단과 정부지원 거부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u> <u>단체장들은 지난달 30일 농식품부가 생산자단체 의견 수렴과정에서 자조금의 기능에 정부가 해야 할 수급과 방역까지 포함시키고 자조금을 법인화 하려는 계획(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있다며 즉각 반발했다.</u> 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한돈의 경우, <u>정부지원금은 12.4%에 불과한데도 전체 사업에 관한 과도한 개입을 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있음을 토로했다.</u> 정부의 원안대로 처리된다면 축단협은 9월중 국회앞 기자회견과 여야 국회의원 면담을 통한 축산단체 입장전달을 할 계획이다. <u>한돈의 경우 한발 더 나아가 자조금 정부보조금 수령을 거부하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순수한 자율적 거출기금 성격으로 운영을 검토하기로 했다.</u> 이와 관련해 한돈협회는 자조금 운영에 관한 사전 농가 설문조사를 통해 70%의 동의를 얻어낸 상태라고 밝혔다. 축단협 김삼주 회장(한우협회장)은 "농식품부와 협의가 우선이겠지만 생산자 단체 의견의 존중없이 강행 추진할 경우 전 축종 대상 대규모 총 쉼기대회를 비롯한 최후 수단으로 자조금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라며 <u>"쉼기대회 이후에도 개편 강행 시 자조금 거출 중단 과 함께 자조금 자율성 확보를 위한 9월 정기국회와 농해수위 입법활동도 지속 추진 할 것"</u>이라고 밝혔다.
--

이에 개정안은 자조금단체가 건전하고 자율적으로 자조금을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장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마련함으로써 위와 같은 갈등을 방지하고, 축산자조금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협력 또는 협조와 관련한 의무를 규정하는 것과 함께 협력 대상으로 하여금 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② 국가로 하여금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의무 또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조금단체가 자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농식품부장관은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추가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유사 입법례 】

「농업협동조합법」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③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와 공공단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공공단체는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4. 자조금의 용도에 사업 성과평가 및 정부 보조금의 차등 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제1항제5호 개정 및 안 제31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개정안은 축산자조금의 용도에 ① 자조금 사업의 성과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추가하고, ② 이를 바탕으로 각 축산자조금 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차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자조금의 용도) ①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2. 축산업자, 소비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중도매인등과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4. 축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 5. 자조금 <u>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u> <u><신 설></u>	제4조(자조금의 용도)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u>사업의 성과에 대한</u>----- <u>제31조의2(자조금 운용 평가 및 정부 지원) ① 관리위원회 및 임의 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는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제2호 또는 제25조제2호에 따른 정부의</u>

현행	개정안
	<u>출연금 또는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방법,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차등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축산자조금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필요하고 축산자조금 거출률 제고를 위해 거출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자조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2) 우유자조금 관리위원회

자조금 운용 평가 및 정부 보조금 차등 지급 방안에 대해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함.

다. 검토 의견

축산자조금은 ①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② 축산업자 및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③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 활성화, ④ 축산물의 품질·생산성 향상 등에 관한 조사연구 등에 사용되고 있음

농식품부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축산법」 제33조¹⁸⁾와 「축산자조금법」 제6조 및 제24조¹⁹⁾에 따라 각 축산자조금 관리위원회에 축산발전기금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배정하고 있음.

한편, 축산자조금의 경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자조금의 용도로 “자조금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산자조금과 같이 자조금 사업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별도의 의무규정이 없어 각 자조금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실시된 바 없음.

이에 따라, 자조금단체에 대한 보조금 배정이 성과평가 등에 따른 차등 지급 방식이 아닌, 일률적 방식으로 배정되고 있는 실정임.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식품부는 연간 약 200억원의 예산 내에서 한우의 경우 한·미/한·영연방 FTA 대책 등으로 가장 많은 약 9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한돈·우유 의무자조금은 50억 수준, 오리·육우 등 규모가 작은 의무자조금은 10억 수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18) 「축산법」

제33조(축산자조금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단체가 축산물의 판로 확대 등을 위하여 축산자조금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의 일부를 그 축산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9) 「축산자조금법」

제6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의무자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제24조(임의자조금의 재원) 임의자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 최근 5년 각 축산자조금 예산 배정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	9,425	9,325	9,325	9,161.3	9,161.3
한돈자조금 관리위원회	5,450	5,350	5,350	5,350	5,350
우유자조금 관리위원회	5,200	5,100	5,100	5,100	5,100
계란자조금 관리위원회	1,166	1,067	640.2	-	-
닭고기자조금 관리위원회	1,458	1,164	313.6	-	-
오리자조금 관리위원회	1,170	1,070	1,440	1,440	1,440
육우자조금 관리위원회	1,013	912	1,012.5	970	970
한국양봉협회	143	180	128.7	128.7	128.7
한국사슴협회	108	98	90	80	80
합계	25,133	24,266	23,400	22,230	22,230

※ 2023, 2024년도 닭고기·계란 자조금 예산 미배정 사유

- 농가 거출금 거출실적이 50% 미만으로 농가들의 자조금 거출 및 활용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 보조금 미배정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2025. 1. 24.) 제출

이와 관련하여 ‘2024년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에서는 농식품부가 축산발전기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자조금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현행의 일률적 지급이 아닌, 성과에 따른 보조금 지급 방안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축산발전기금 2024년 기금존치평가 결과 중 관련 내용 발췌 】

- 축산자조금사업은 일률적 지급이 아닌 성과에 따른 정부 보조금 지급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타 사업과의 중복성은 없는지, 현재 자조금 지원규모가 본래 목적 지출 소요액보다 과다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구됨. 관련하여 **자조금 제도의 성과에 따른 정부보조금 지급 방안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2025. 1. 24.) 제출

이에 개정안은 자조금의 용도에 “자조금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축산자조금 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차등 지원 근거를 제31조의2로 신설하려는 것임.

‘성과평가 및 이에 따른 차등 지원’과 관련한 유사 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 성과평가에 따른 차등지원 유사입법례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10조(통계 관리 및 성과평가 등) ② 환경부장관은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u>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u>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u>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u>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7조(성과보고 및 평가) ①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실적과 성과를 제3조제1호·제2호의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3호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2년마다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의 개선 및 소요기간 단축 2. 토지이용 인·허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향상 3.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에 대한 만족도 평가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하고 <u>그 결과에 따라 포상 또는 차등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u>

한편, 개정안에 따라, 각각 품목이 다른 자조금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려면, 이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성과 평가 방식 및 기준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와 관련하여 ① 축산자조금 성과평가 연구('21.2월, 건국대), ② 자조금 현황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21.10월, 농경연)가 선행되었는바(참고자료 3), 각 자조금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방식 및 기준 등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① 축산발전기금 2024년 기금준치평가 결과, ②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을 차등지원하는 유사 입법례가 다수 있다는 점, ③ 축산자조금 성과평가 방식 및 기준 등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었다는 점, ④ 개정안에 따라, 자조금 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측면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안 제31조의2 제1항²⁰⁾에 따르면, “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가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과 같이 각 축산단체가 실시한 사업운용 및 성과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하도록 규정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담보

20)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제2206676호) 제31조의2(자조금 운용 평가 및 정부 지원) ① 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는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되기 어려울 수 있는바,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이 전문성이 있는 외부 기관에 성과평가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성과평가 관련 유사 입법례 】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자조금 운용 평가) ① 의무자조금단체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u>외부전문기관</u> 으로부터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2년마다 받고 그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안 제31조의2제1항에서는 각 축산단체로 하여금 성과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성과 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성과 평가 실시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이 안 제31조의2제1항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과태료 부과 관련 유사 입법례 】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자조금 운용 평가) ① 의무자조금단체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2년마다 받고 그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셋째, 안 제31조의2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제2호 또는 제25조제2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원금의 경우, 현재 축산발전기금의 ‘축산자조금(3731-302)’ 사업을 통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축산단체에 대하여 출연금이 교부된 적은 한번도 없었음.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²¹⁾에서는 국가가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어떠한 기관이 출연금과 보조금을 이중으로 지원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현행법 제6조제2호 및 안 제31조의2제2항은 자조금의 재원으로 ‘출연금 또는 지원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자조금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서 ‘자조금지원’ 사업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하나의 자조금단체가 출연금과 보조금

2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임.

따라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수정하여, 해석상의 혼란 여지를 제거할 필요가 있어 보임.

유사 입법례의 경우에도 법인의 재원 조달에 있어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유사입법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한국산업단지공단 설립 등) ①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 활동 지원과 산학협력 촉진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공단은 제45조의21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 5. (생략)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①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생태복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키고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하 "보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전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보전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제3항에 따른 출연금·보조금, 제5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입금·수수료,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 차입금,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출연금·보조금의 지급·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자조금의 용도에 자조금 거출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추가
(안 제4조제1항제6호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개정안은 자조금의 용도에 자조금 거출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자조금의 용도) ①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2. <u>축산업자</u>, 소비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중도매인등과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에 대한 <u>교육 및 정보제공</u> 3.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4. 축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 5. 자조금 <u>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u> <u><신설></u> 6. <u>그 밖에</u>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제26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가 <u>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호 및 제25조제2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은 제1항제1호 중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의 광고(방송프로그램에서 축산물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는 제외한다)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자조금의 용도)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u>사업의 성과에 대한</u>--- 6. 자조금 거출 장려를 위한 <u>교육 및 홍보</u>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자조금 사업에 대한 성과측정이 미흡하여 관행적으로 예산이 배분되고 있으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축산자조금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필요하고, 축산자조금 거출률 제고를 위해 거출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자조금의 사용이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다. 검토 의견

현행법 제4조제2항에서 제6조제2호 및 제25조제2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은 제1항제1호 중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의 광고(방송프로그램에서 축산물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는 제외한다)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거출률 제고 관련 홍보는 거출금으로만 집행되고 있음.

각 자조금별 거출률 현황을 살펴보면, 한우, 한돈, 우유, 육우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100%에 가까운 높은 거출률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닭고기 자조금은 '23년을 제외하고 2%~10%의 낮은 거출률을 기록하였고,²²⁾ 계란자조금의 경우 지속적으로 30%~40%의 낮

²²⁾ 닭고기자조금은 다른 자조금과 달리 이해관계가 다른 4개 단체(양계·육계·토종닭협회, 농협), 계열사 및 농가 참여 등에 따른 이해가 상충되어 지속적으로 거출률이 낮았으나, '22.9 자조금 정상화를 위한 협약서, 정상화 운영 합의서 등을 통해 자조금 정상화를 도모하였고 거출이 재개되어 거출률이 개선되었음.

은 거출률을 보이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자조금 거출률 제고를 위해 자조금의 용도에 “자조금 거출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추가하려는 것임.

【 의무거출금 거출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한우	한돈	우유	계란	닭고기	오리	육우
'19	고지	15,279	19,480	3,986	2,831	2,742	1,222	957
	실적	15,162	19,069	3,986	625	297	1,148	956
	비율	99.2	97.9	100.0	22.1	10.8	94.0	99.9
'20	고지	15,241	20,089	4,075	2,544	3,916	1,034	1,087
	실적	15,224	20,085	4,074	898	92	1,018	1,087
	비율	99.9	100.0	100.0	35.3	2.3	98.4	100.0
'21	고지	15,844	20,168	3,975	1,948	5,900	1,304	1,143
	실적	15,837	20,168	3,975	946	187	1,346	1,143
	비율	100.0	100.0	100.0	48.6	3.2	103.2	100.0
'22	고지	17,341	20,436	5,678	2,253	4,850	1,588	1,236
	실적	17,330	20,421	5,676	866	312	1,613	1,236
	비율	99.9	99.9	100.0	38.4	6.4	101.6	100.0
'23	고지	18,563	20,698	5,666	2,576	1,835	1,398	1,242
	실적	18,551	20,622	5,640	793	1,197	1,498	1,242
	비율	99.9	99.6	99.5	30.8	65.2	107.2	100.0

* 연간 기준(1~12월)으로 작성된 자료로, 일반적인 자조금 사업 운영 기간(12~11월)과 달라 자조금 사무국 결산서 상 거출금과는 차이가 있음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2025. 1. 24.) 제출

낮은 거출률은 각 자조금의 재정 운용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자조금 사업 운용에 장애가 되는바, 자조금 거출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거출률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축산업자, 소비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중도매인등과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을 자조금의 사용 용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제26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돈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한돈자조금을 사용하여 한돈자조금 거출률 제고 및 참여 확대 사업을 실시한 바 있음.

따라서, 현행법 상으로도 자조금 거출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미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돈자조금 거출률 제고 및 참여 확대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한돈농가, 수납기관(도축장), 유통업자, 관련 기관·단체·업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계도홍보, 협력유도, 법적대응 활동을 실시하여 한돈자조금 납부 동참 확대 및 거출률 제고 유도

□ 사업내용

- 사업개요 : 한돈자조금 거출홍보 인쇄물 및 홍보물을 배부하여 자조금사업에 대한 농가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수납기관(도축장), 유통업자, 농가 등 관련 기관·단체·업체의 협력을 유도하여 한돈자조금 납부 동참 확대 및 거출률 제고 유도
- 사업주관 : 한돈자조금사무국 경영지원부
- 사업추진일정 : 연중
- 사업규모 : 90,000천원
- 사업추진방법
 - 한돈자조금 거출홍보 인쇄물, 영수증 등 제작하여 도축장 등 배부
 - 한돈자조금 홍보물을 제작하여 자조금 수납 및 운용에 협조하는 수납기관(도축장) 관계자, 유통업자, 농가, 관련 기관·단체·업체 등에 배부
 - 한돈자조금 조성, 운용 등에 관련된 법적 자문, 법적 소송 진행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2025. 1. 24.) 제출

6. 중도매인 등이 의무거출금 대납 시 수납기관에 납부자 인적사항
제공 의무 부여 (안 제18조제3항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개정안은 현행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등이 의무거출금을 수납기관에 대신 납부할 경우 의무거출금의 납부자 및 미납부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수납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의무거출금의 납부) ① 의무자 조급이 설치된 경우 축산업자는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위탁 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2항,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같다)할 때 또는 축산물을 판매할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의무거출금의 금액을 관리위원회에 <u>납부하여야 한다.</u>	제18조(의무거출금의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u>축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도매인(仲都賣人) 및 식육판매업자 등(이하 “중도매인등”이라 한다)에게 의무거출금을 관리위원회에 <u>대신 납부</u>하게 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중도매인등은 해당 가축을 도축용으로 판매하였거나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축산업자에게 의무거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산업자가----- ----- ----- ----- ----- ----- ----- ----- ----- -----.

현행	개정안
<신설> ③ 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 납부안내서의 발송이나 공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 대상, 납부 금액, 납부 방법 등 의무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축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 납부안내서를 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목별 의무거출금의 납부 방법 등 의무거출금의 <u>납부에</u>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등이 의무거출금을 수납기관에 대신 납부할 경우에는 의무거출금의 납부자 및 미납부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수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⑥ -----제5항----- ----- ----- <u>납부 및 수납에</u>----- -----.

나. 관계기관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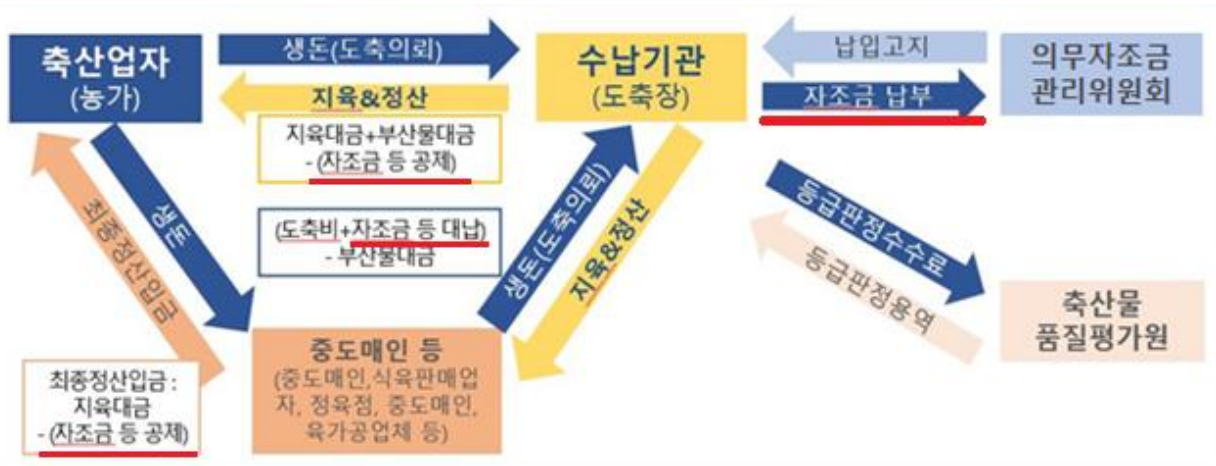
1) 농림축산식품부

의무거출금 납부 현황 관리 및 거출률 제고를 위해 의무거출금 납부자 및 미납부자에 대한 인적 사항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다. 검토 의견

현행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축종의 축산업자는 의무거출금을 해당 축종의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고, 의무거출금 거출 절차는 다음 표와 같음.

【 의무거출금(돼지) 거출 절차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2025. 1. 24.) 제출

먼저, ① 축산업자가 도축의뢰를 하면, ② 도축장(수납기관)에서 도축 후 지육²³⁾·부산물 대금에서 의무거출금을 공제한 최종 정산금을 축산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의무거출금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음.

23) 소를 도축하여 머리 제거, 우족 제거, 박피, 내장 적출을 하고 난 상태

【 의무거출금 거출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한우	한돈	우유	계란	달걀	오리	육우
'19	고지	15,279	19,480	3,986	2,831	2,742	1,222	957
	실적	15,162	19,069	3,986	625	297	1,148	956
	비율	99.2	97.9	100.0	22.1	10.8	94.0	99.9
'20	고지	15,241	20,089	4,075	2,544	3,916	1,034	1,087
	실적	15,224	20,085	4,074	898	92	1,018	1,087
	비율	99.9	100.0	100.0	35.3	2.3	98.4	100.0
'21	고지	15,844	20,168	3,975	1,948	5,900	1,304	1,143
	실적	15,837	20,168	3,975	946	187	1,346	1,143
	비율	100.0	100.0	100.0	48.6	3.2	103.2	100.0
'22	고지	17,341	20,436	5,678	2,253	4,850	1,588	1,236
	실적	17,330	20,421	5,676	866	312	1,613	1,236
	비율	99.9	99.9	100.0	38.4	6.4	101.6	100.0
'23	고지	18,563	20,698	5,666	2,576	1,835	1,398	1,242
	실적	18,551	20,622	5,640	793	1,197	1,498	1,242
	비율	99.9	99.6	99.5	30.8	65.2	107.2	100.0

* 연간 기준(1~12월)으로 작성된 자료로, 일반적인 자조금 사업 운영 기간(12~11월)과 달라 자조금 사무국 결산서 상 거출금과는 차이가 있음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2025. 1. 24.) 제출

현행법 제18조제2항에서는 축산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중도매인(仲都賣人) 및 식육판매업자 등(이하 “중도매인등”이라 한다)’에게 의무거출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중도매인 등이 축산업자를 대신하여 도축 의뢰를 하는 경우, 도축하는 가축 마릿수에 해당하는 의무거출금을 도축장(수납기관)에 납부하고, 의무거출금을 공제한 지육·부산물 대금을 최종 정산금으로

해당 축산업자에게 전달하고 있음.

【 수납기관 현황 】

- | | |
|----------------------|---------------------|
| ○ 한우자조금 수납기관 : 66개소 | ○ 한돈자조금 수납기관 : 64개소 |
| ○ 우유자조금 수납기관 : 38개소 | ○ 육우자조금 수납기관 : 50개소 |
| ○ 닭고기자조금 수납기관 : 34개소 | ○ 계란자조금 수납기관 : 9개소 |
| ○ 오리자조금 수납기관 : 13개소 | |

*한우·한돈·육우자조금: 전국에 있는 소·돼지 도축장이 의무거출금 수납기관으로 역할하고 있음

*우유자조금: 전국에 있는 유업체(집유장)이 의무거출금 수납기관으로 역할하고 있음

*닭고기·오리 자조금: 전국에 있는 도계장, 도압장이 의무거출금 수납기관으로 역할하고 있음

*계란자조금: 산란성계를 도계하는 도계장이 의무거출금 수납기관으로 역할하고 있음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2025. 1. 24.) 제출

이 과정에서 해당 축산업자가 의무거출금 납부를 거부하면 중도매인 등은 의무거출금을 대신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무거출금을 포함한 최종 정산금을 축산업자에게 전달하고 있는바,

해당 중도매인 등은 본인을 대행자로 지정한 축산업자 중 누가 의무거출금 납부를 동의하였고, 누가 거부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중도매인 등이 의무거출금 납부자 및 미납부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수납기관(도축장)에 통보할 법령 상 근거가 없어 해당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의무거출금 납부(미납)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중도매인등이 의무거출금을 수납기관에 대신 납부

할 경우에는 의무거출금의 납부자 및 미납부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수납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무거출금 납부 현황 파악 및 의무 거출금 거출률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입법미비를 해소하려는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안 제18조제3항에서 “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등이 의무거출금을 수납기관에 대신 납부할 경우에는 의무거출금의 납부자 및 미납부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수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은 상기 인적사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및 도축마릿수를 말한다)”와 같이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의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안 제18조제3항에 따라, 중도매인등이 수납기관에 납부자 및 미납부자의 인적사항을 통보할 의무가 신설되었으나, 통보 의무 위반시에 대한 처벌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중도매인등이 수납기관에 납부자 및 미납부자의 인적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의 검토가 필요해 보임.

7.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 제한 근거 마련(안 제18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현행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축산업자 등(이하 “미납자”라 한다)에 대하여 축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의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축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축산업자 2. 제18조제2항에 따라 의무거출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중도매인등 3. 제1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의무거출금의 수납을 위탁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수납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수납기관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의무거출금 거출률 제고 및 해당 품목 내 무임승차자 방지를 위해 의무거출금 미납자 등에 대해서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의 지원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2) 축산물 관련 단체 협의회 및 축산 자조금단체

거출률 향상을 위해 미납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다. 검토 의견

현행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은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는 미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 규정이 별도로 없는 실정임.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농수산업자에 대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축산업자도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바,

의무거출금의 거출률 향상 및 무임승차자 방지를 위해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축산업자 등에 대하여 정부 및 지자체 등의 각종 지원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축산업자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무거출금 미납부자가 증가하여 의무거출금 납부가 줄어들 경우 결과적으로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의 재정 부실로 이어져 축산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또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축산자조금법」의 제정 목적이 퇴색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자조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무자조금 거출률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유사 입법례인 「농산자조금법」에서는 “농식품부장관”이 의무거출금 미납부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원 제한은 ‘정부 사업’에 국한되어 있음.

그런데, 개정안은 ‘정부 사업’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의 사업까지도 의무거출금 미납부자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에 비추어 과도한 제한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농수산물자조금법 및 개정안 비교 】

구 분	농산물자조금법	축산물자조금법 개정안
주체	농식품부장관	농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제재 조치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둘째, 안 제18조의2제2호 “제18조제2항에 따라 의무거출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중도매인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의무거출금을 대신 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중도매인등”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의 필요가 있어 보임.

8. 의무자조금 운용계획 승인 기한 마련(안 제21조제2항 후단, 제3항 및 제4항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개정안은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가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회계연도 개시 후 30일 이내에 이를 승인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의무자조금은 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제21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 ----- --. 이 경우 관리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운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 개시 후 30일 이내에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관리위원회가 운용계획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운용계획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할 수 있다.
<신 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질병 발생, 축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행	개정안
③ 제2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지출계획은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④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 중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면 의무자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이 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⑥ 관리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⑦ 의무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은 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자조금의 조성, 운용계획 수립·변경 절차,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 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에는 30일 범위에서 제2항 후단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 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⑦ 제6항----- ----- ----- ----- -----. ⑧ · ⑨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⑩ -----제9항----- ----- ----- ----- -----.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자조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의 운용계획안 제출 기한 및 정부의 승인 기한 설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2) 축산물 관련 단체 협의회 및 축산 자조금단체

원활한 자조금 사업 추진을 위해 운용계획안 제출 및 승인 기한 법제화가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다. 검토 의견

현행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같은 조 제8항은 의무자조금의 운용계획 수립·변경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²⁴⁾

이에 따라, 「축산자조금 사업시행지침」(농식품부 내부 사업지침)에서는 “모든 자조금관리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차년도 사업계획(편성)안을 대의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4)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의무자조금은 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②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자조금의 조성, 운용계획 수립·변경 절차,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 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축산자조금 사업시행지침」

<자조금 예산의 편성 일정>

- 모든 자조금관리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차년도 사업계획(편성)안을 대의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해야 한다.
- * 사업계획 제출 시 농가거출금과 정부보조금을 구분하여 작성(「보조금법」 제16조, 제17조)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31일까지 편성안을 심의하고, 자조금과 협의하에 사업계획을 원안 또는 수정 승인한다.
- * 「축산자조금법 시행규칙」 제 12조에 따라 11월 30일까지 계획(안)부터 선공시하되, 농식품부 승인 과정에서 수정된 사항은 차년도에 재공시
- ※ '22년은 사업기준 개편에 따른 조치 시일 소요 등을 감안하여 유동적으로 일정을 운영한다.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2025. 1. 24.) 제출

그런데, 자조금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자조금 운용계획안의 최근 5개년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도를 제외한 모든 연도에 운용계획안 승인에 3~4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음.

특히, 2022년도의 경우 가장 빠르게 승인한 우유자조금 운용계획안의 경우에도 제출 후 4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고, 한돈·육우 자조금 운용계획안의 경우 6개월이 지나서야 승인되었음.

【 최근 5년간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안 승인 현황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	제출일	'19.11.29.	'20.12.14.	'21.12.1.	'22.11.30.	'24.2.19.
	승인일	'20.3.6.	'21.3.18.	'22.5.10.	'23.4.17.	'24.3.8.
한돈자조금 관리위원회	제출일	'19.11.13.	'20.11.18.	'21.11.12.	'22.11.24.	'23.11.20.
	승인일	'20.3.6.	'21.3.19.	'22.5.10.	'23.4.7.	'24.2.1.
우유자조금 관리위원회	제출일	'19.12.9.	'20.12.1.	'21.12.27.	'22.11.30.	'23.12.1.
	승인일	'20.1.8.	'21.3.18.	'22.5.11.	'23.4.6.	'24.1.29.
계란자조금 관리위원회	제출일	'19.12.31.	'21.7.15.	'22.2.17.	'23.4.27.	'24.1.10.
	승인일	'20.5.12.	'21.7.20.	미승인*	'23.7.24.	'24.1.26.
닭고기자조금 관리위원회	제출일	'20.12.22.	'21.12.13.	'22.12.21.	'23.9.25.	'24.8.23.
	승인일	'20.12.28.	미승인*	미승인*	'23.9.26.	'24.8.29.
오리자조금 관리위원회	제출일	'19.12.30.	'20.11.11.	'21.12.17.	'22.11.22.	'23.11.2.
	승인일	'20.3.17.	'21.4.25.	'22.5.11.	'23.4.10.	'24.1.25.
육우자조금 관리위원회	제출일	'19.12.12.	'20.12.23.	'21.11.11.	'23.1.26.	'23.12.1.
	승인일	'20.1.8.	'21.3.8.	'22.5.10.	'23.4.7.	'24.1.29.
한국 양봉협회	제출일	'20.2.6.	'21.1.19.	'21.12.9.	'23.1.30.	'24.1.22.
	승인일	'20.3.30.	'21.4.26.	'22.5.9.	'23.2.6.	'24.1.29.
한국 사슴협회	제출일	'20.4.28.	'20.11.30.	'21.11.30.	'22.11.30.	'23.11.29.
	승인일	'20.4.28.	'21.3.8.	'22.5.13.	'23.5.22.	'24.1.29.

음영 : 운용계획안 승인에 4개월 이상 소요

* 계란·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사업 추진 불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2025. 1. 24.) 제출

이와 같이 농식품부의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안 승인이 지체될 경우
 ①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② 축산업자 및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③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 활
 성화, ④ 축산물의 품질·생산성 향상 등에 관한 조사연구 등 축산자
 조금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이 되는 측면이 있음.

【 '24년도 한돈자조금 운용계획 수립 추진 경과 】

구 분	기 간	내 용
한돈산업 환경분석, 시장전망, 성과분석	'23.1~9월	- 한돈산업 환경 및 트렌드 분석 - 해외 육류 마케팅 사례 조사 - 소비자 돼지고기 소비 실태 조사
24년 사업수립 관련 대의원 및 한돈인 간담회	'23.8~9월	- 2024년 자조금 운영 관련 의견수렴 (도별 순회 간담회)
전문가 인터뷰	'23.9월 중순~ 10월 초	- 2024년 자조금 방향성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실무자 회의 (5차)	'23.8~9월	- 추진 일정 및 사업 추진 방향성 수립, '24년 자조금 사업계획 제안 등 - '23년도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진단, '24년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추진전략 등 논의 - 각 팀별 '24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제안 관련 협의 - '24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 조정안 취합본 검토, 추진방향, 세부 추진전략에 부합하는 사업 계획 및 예산 검토 - 사무국, 협회, 농협 관리위원장 예산 설명 및 예산 조정
기획예산위원회	'23.10월 상순	- 관리위원회 상정(안) 검토 - 추진 방향 의견 수렴
관리위원회 심의 및 의결	'23.10월 중순	-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및 최종 검토 - 대의원회 상정(안) 의결
대의원회 의결	'23.11월 중순	-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상정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요청	'23.11월 중순	-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24년 2월초	- 426백만원 조정 승인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2025. 1. 24.) 제출

이에 개정안은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한 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후 30일 이내에 승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생산비 급등과 수입 축산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많은 농가들을 위해 소비촉진 홍보, 수급 안정,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의무자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은 농식품부 내부 사업지침(「축산자조금 사업시행지침」)에 있는 일부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한편, 안 제21조제3항은 “관리위원회가 운용계획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운용계획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출된 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후까지 승인하도록 규정한 안 제21조제2항의 승인기간이 “60일”임을 고려할 때, 적정한 기간으로 보임.

또한, 안 제21조제4항은 가축의 질병 발생, 축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승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가축 질병 발생 및 축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축산자조금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용계획안 상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위원회에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추가로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유사 입법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받으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한 후 부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거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간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u>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u>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스마트혁신사업 등)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과 관련된 환경·안전·보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이거나 <u>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조건 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u>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③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자에게 <u>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u>

한편, 현행법 제21조제8항에서 “의무자조금의 조성, 운용계획 수립·변경 절차,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 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관련 사항들이 「축산자조금 사업시행지침」에서 규정되고 있음.

그런데, 「축산자조금 사업시행지침」(농식품부 내부사업지침)을 살펴보면, ① 보조금 배정 기준, ② 자조금 사용 용도 제한, ③ 위원장 겸임 금지 등 1차적으로 축산자조금 관리위원회에 구속력을 가지고, 2차적으로는 의무거출금을 납부하는 축산농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존재함(참고자료 4 참조).

【 관련 기사 】

축산자조금사업 정부 입맛대로...업계 '반발'
<u>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축산자조금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두고 축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u> <u>하지만 보조금 매칭 기준 등 지침 세부 내용을 두고, 축산자조금 사업을 정부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u> 소비홍보 사업에 대한 보조금 매칭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u>지침엔 단순 행사성 소비홍보 사업은 지양해야 하며, 공공성·사업 필요성 평가에 따라 정부보조금 매칭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는 정부보조금을 매칭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u> 반면 농식품부와 협의 아래 진행하는 수급조절·방역·필수 연구용역 사업 등엔 거출금의 100%를 초과해 보조금 매칭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한 자조금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지침 개정안을 배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소비홍보 사업 억제에 대한 반대 뜻을 표출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힘들여 생산한 축산물을 잘 판매하기 위해 농가 스스로 거출한 기금 용처를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지침엔 농가 거출실적이 도축실적의 50% 미만일 경우 농가들의 자조금 거출·활용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정부보조금을 매칭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닭고기·달걀 등 거출률이 저조한 자조금단체에 대한 지원금액을 감액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또한, 유사 입법례인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사 입법례 】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자조금의 조성, 자금운용계획 수립·변경 절차,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 <u>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따라서, ① 농식품부 내부 사업지침인 「축산자조금 사업시행지침」이 자조금단체 및 축산농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 ② 유사 입법례인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축산자조금 사업시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등 중요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거나, 농식품부 내부 사업지침보다는 ‘고시’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9. 축산자조금의 수급조절 방법 명시(안 제23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개정안은 가축의 사육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조성된 자조금의 범위에서 축산업자간 공동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물량에 대해 축산물의 수매·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조정·출하조절 등(이하 “수급조절”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3조의2(수급조절 등) ① 관리위원회는 가축의 사육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성된 자조금의 범위에서 축산업자간 공동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물량에 대해 축산물의 수매·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조정·출하조절 등(이하 “수급조절”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매·비축한 축산물의 판매대금을 자조금의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가 수급조절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10조에 따른 대의원회 의결 및 「축산법」 제32조의4에 따른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자문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급조절의 기준과 구체적인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현저한 수급 불안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 축산자조금의 범위 내에서 축산물의 수매·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조정·출하조절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2)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

수매·비축은 정부의 역할이며, 자조금의 사용 용도는 축산물의 판매지원이 합당함. 또한, 축산물수급조절협회의 자문으로 인해 수급 조절의 시의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3) 우유자조금 관리위원회

「낙농진흥법」에 따라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 사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으므로 동 조항에서 우유는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다. 검토 의견

현행법 제4조²⁵⁾는 자조금의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있고, 이 중 제4

2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자조금의 용도) ①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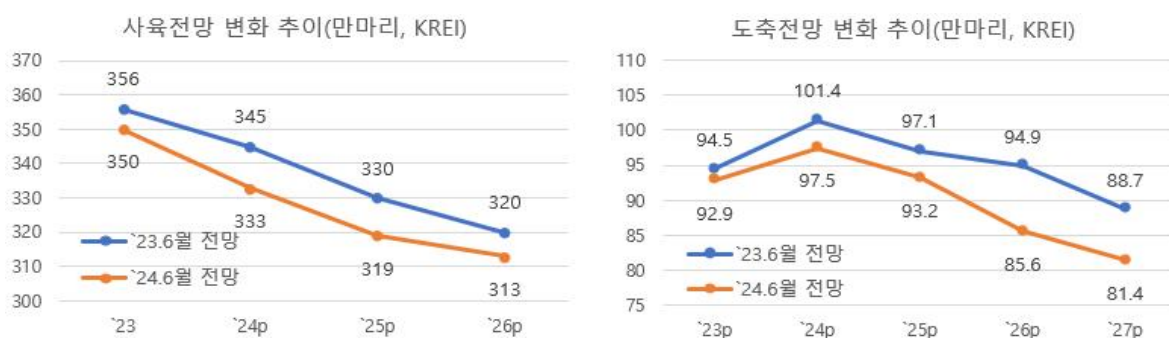
1.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2. 축산업자, 소비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중도매인등과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조제1항제3호는 자조금을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3년 동안 13.9만 마리의 암소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비육 후 단계적 도축²⁶⁾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도축 장려금을 한우 자조금으로 집행하여 한우의 생산조절 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그 결과, 선제적 암소 비육·도축 사업 시행 전 한우 사육·도축 마릿수 전망치(‘23. 6. 전망) 대비 사육 마릿수는 연간 5~10만 마리(2~3%) 감소하였으며, 도축 마릿수는 연간 3~10만 마리(2~10%) 감소하는 등 한우의 수급여건이 크게 호전되었음.

【 선제적 암소 비육·도축 사업 시행 전 후 사육·도축 전망 추이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2025. 1. 24.) 제출

4. 축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
5. 자조금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6.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제26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호 및 제25조제2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은 제1항제1호 중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의 광고(방송프로그램에서 축산물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는 제외한다)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26) 번식용 암소를 도축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비육이 필요하며, 비육하는 암소는 송아지를 생산하지 못하기에 비육 순간 생산조절에 기여

【 한우자조금으로 실시한 한우 생산조절 사업 현황 】

□ 추진 배경

- 한우 공급과잉이 예상됨에 따라, 한우 도매가격 연착륙 유도를 위해 선제적 암소 비육·도축 지원 추진
 - 한육우수급조절소위원회 및 암소감축실무협의회를 통해 추진방안을 논의 후 한우자조금·한우협회·농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

□ 주요 내용

- 2차에 걸쳐 **13.9만 마리**를 목표로 '20~'23년 동안 암소를 신청·접수받아 일정 기간 비육 후 단계적 도축

대상개체	주관	인센티브	목표	도축 실적
경산우 및 미경산우 (개월령 제한 있음)	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	장려금 15~20만원/마리 (자조금 15~20, 농협 0~3) 보증씨수소 정액(유상) 사료구매자금 한도 확대 (농식품부)	13.9만마리	13.6만마리 (‘24.12월 기준)

□ 한우자조금의 역할

- 한우 송아지 가격 및 도매가격이 높은 시기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농가 참여 유도**를 위해 한우자조금, 농협 등을 통해 **인센티브 제공**
 - **한우자조금**은 수급안정적립금*(100억원) 등을 활용하여 **장려금** 등으로 '24년까지 암소감축에 **174억원 집행**
 - * 수급불안상황에 대비하여 농가거출금 일부를 매년 일정액 적립하여 조성

□ 추진 성과

- **암소 선제적 감축으로 수급여건 크게 호전**
 - * 최근 전망과 과거 전망치 대비 : (사육) 연간 5~10만↓, 2~3%↓ / (도축) 3~10만↓, 2~1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2025. 1. 24.) 제출

한·미 FTA에 따른 소고기 관세율 인하 계획에 따라 2026년부터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예정이고, 향후에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²⁷⁾ 등 지속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정부 정책만으로 한우를 비롯한 축산물의 수급조절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조금 사용 용도인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사업”과 관련하여 수급조절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과 함께 의무자조금 단체가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최근 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 제반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소비촉진이나 홍보만으로는 축산물의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과,

개정안에 따라, 자조금 사업의 수급조절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여 소비촉진 활동 등과 수급조절 작용의 병행을 통한 시너지 효과(농가 소득 제고)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7) CPTPP: 정식명칭은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이며,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 이 참여한 자유무역협정임.

첫째, 현행 「낙농진흥법」에 따라, 낙농진흥회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조절을 시행하고 있음.

【 관련 조문 】

「낙농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 원유(原乳)와 유제품(乳製品)의 수급(需給) 조절, 가격 안정과 유통 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낙농업과 낙농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낙농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낙농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3. 낙농 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4.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5. 원유의 품질 향상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6. 원유의 집유, 수송 및 저장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 7. 학교 우유 급식, 소비 홍보 등 유제품의 수요 확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낙농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계획 수립 2. 원유의 구입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 3. 원유의 품질 향상에 관한 업무 4. 유제품의 구매(收買), 비축(備蓄), 판매(販賣) 및 수출입에 관한 업무 5. 우유·유제품의 소비 촉진, 홍보 및 시장 개척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낙농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8조(원유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진흥회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해의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젖소 사육 전망 2. 원유 생산량 및 유제품 소비량 3. 제13조에 따른 집유조합(集乳組合)별 원유 생산 계획량 4.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유가공업체와 그 밖에 원유를 구입하려는 자(이하 “원유수요자”라 한다)에 대한 원유 공급계획 5.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 안정을 위한 사항 6. 그 밖에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 등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진흥회는 원유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유조합과 원유수요자에게 원유 수급계획, 판매실적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집유조합과 원유수요자는 제3항에 따라 진흥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우유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수급 조절 사업을 시행할 경우 낙농진흥회가 수행하는 수급 조절과 중복되어 혼선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축산법」 제32조의4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두면서 「낙농진흥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원유 및 유제품은 제외하고 있음.

축산법
제32조의4(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가축 및 축산물(「낙농진흥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원유 및 유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자문(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이하 “수급조절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둘째, 안 제23조의2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가 수급조절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10조에 따른 대의원회 의결 및 「축산법」 제32조의4에 따른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자문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 제23조의2제4항²⁸⁾에서 상기 “제4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요청서”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농림

28) 제23조의2(수급조절 등) ④ 제1항에 따른 수급조절의 기준과 구체적인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요청서”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10. 통계 및 통계자료 작성·관리 근거 마련(안 제29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 및 축산업자 현황 등을 포함한 통계자료(이하 “통계등”이라 한다)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축산단체, 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이하 “축산단체등”이라 한다)에 관련 통계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조의2(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 및 축산업자 현황 등을 포함한 통계자료(이하 “통계등”이라 한다)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축산단체, 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이하 “축산단체등”이라 한다)에 관련 통계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통계등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공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계등을 작성·관리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32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직무상 알게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등의 작성·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자조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통계 및 통계자료를 작성·관리할 필요가 있고, 대의원 선출 등을 위해 축산업자 현황 등 통계자료를 축산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다. 검토 의견

현행법 제8조제1항²⁹⁾에 따라,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 등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등을 선출구역(이하 “선출구”라 한다)으로 하여 축산업자 중에서 대의원을 선출하고 있음.

대의원 선출은 동법 제8조제4항³⁰⁾에 따라, 선출구에 있는 축산업자의 과반수 또는 선출구의 가축 또는 축산물의 3/2 이상을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축산업자가 투표에 참석하여야 함.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³¹⁾에 따라, 축산단체는 투표일 30일

29)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대의원의 선출 등) ①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 등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등을 선출구역(이하 “선출구”라 한다)으로 하여 축산업자 중에서 대의원을 선출한다. 이 경우 축산단체가 대의원의 선출에 지출한 비용은 의무자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30)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대의원의 선출 등) ④ 대의원의 선출은 선출구에 있는 축산업자의 과반수 또는 선출구의 가축 또는 축산물의 3분의 2 이상을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축산업자가 투표에 참여하여야 한다.

31)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대의원 후보자의 자격·등록 및 선거 등) ③ 축산단체는 투표일 30일 전까지 선거권자를

전까지 선거권자를 확정하고, 투표일 10일 전까지 선거인 명부 등을 공고하여야 하는바,

축산단체는 대의원 선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축산업자별 사육마릿 수 등을 포함한 ‘지역별 축산업자 현황자료’가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대의원 선출을 위해 필요한 통계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³²⁾은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보고받은 통계자료를 대의원 선출을 위해 축산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개정안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 및 축산업자 현황 등을 포함한 통계자료(이하 “통계등”이라 한다)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② 작성·관리하는 통계등을 매년 축산단체, 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이하 “축산단체등”이라 한다)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③ 효율적인 통계등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확정하고, 투표 일시 및 장소, 선거인명부 및 선출구별 대의원 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축산단체는 투표일 10일 전까지 후보자 명부를 공고하여야 한다.

32)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대의원의 선출 등)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4항에 따른 대의원의 선출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 축산업자의 수 및 축산업자별 가축사육 마릿수를 조사한 최근 1년 이내의 행정통계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자료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④ 통계등을 작성·관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 등을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축산단체가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축산업자 현황 등의 통계자료가 필수적이라는 측면과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개정안은 입법미비를 해소하려는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유사 입법례 】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 및 농수산업자 현황 등을 포함한 통계자료(이하 “통계등”이라 한다)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관련 통계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통계등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계등을 작성·관리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33조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등의 작성·관리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안 제29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 및 축산업자 현황 등을 포함한 통계자료(이하 “통계등”이라 한다)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축산단체, 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이하 “축산단체등”이라 한다)에 관련 통계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안 제29조의2제1항에 따르면, 축산단체의 대의원 선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축산업자 현황 등 개인정보가 담긴 통계자료를 작성·관리할 수 있고, 이를 축산단체등에 제공할 수 있는바,

개인정보와 관련된 통계자료의 작성·관리 및 제공 요건을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금지되어 있으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³³⁾

또한, 그 경우에도 제공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므로, 제공 목적 및 범위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필요가 있음.³⁴⁾

33)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11.3.29)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만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3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한편, 안 제29조의3제1항³⁵⁾에서는 축산단체등이 대의원의 선출과 해당 축산물의 축산업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축산업자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안 제29조의3제1항처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의 요건’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안 제29조의2제1항을

대의원의 선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축산업자 현황 등을 포함한 통계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작성·관리하고, 축산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또한, 안 제29조의2제1항의 “필요한 통계 및 축산업자 현황 등을 포함한 통계자료”의 경우 ‘등’에 해당하는 자료가 어떠한 것인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대상 및 범위가 모호한바,

이를 “대의원 선출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 및 축산업자 현황 등을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통계자료”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³⁶⁾

다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제2206676호) 제29조의3(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① 축산단체등은 대의원의 선출과 해당 축산물의 축산업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중 해당 축산물 축산업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및 사육 마릿수를 말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현행법 제8조제1항³⁷⁾에 따라, 대의원 선출의 주체는 ‘축산단체’이므로, 안 제29조의2제1항에서 축산단체 외에 ‘통계등의 제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① 관리위원회, ② 수납기관은 통계등의 제공 목적인 대의원 선출과는 관련이 없음.

따라서, 축산업자별 사육마릿 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자료를 관련이 없는 단체에까지 광범위하게 제공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계등의 제공 대상에서 ① 관리위원회, ② 수납기관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셋째, 안 제29조의3제2항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축산단체등은 대의원 선출과 해당 축산물의 축산업자 명부 작성을 위한 자료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의원 선거 및 해당 축산물의 축산업자 명부 작성이 끝나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 제29조의2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통계등을 작성·관리하는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축산업자 현황 등을 제공받은 축산단체등에 대하여는 안 제29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목적 외

3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의원의 선출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 및 축산업자 현황 등을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통계자료(이하 “통계등”이라 한다)를 작성·관리하고, 축산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다.

37)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대의원의 선출 등) ①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 등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등을 선출 구역(이하 “선출구”라 한다)으로 하여 축산업자 중에서 대의원을 선출한다. 이 경우 축산단체가 대의원의 선출에 지출한 비용은 의무자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사용 금지, ② 축산업자 명부 작성이 끝나는 즉시 파기 의무와 관련한 별도 의무 규정이 없음.

따라서, 안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축산업자 현황 등을 제공받은 축산단체에 대하여 안 제29조의3제2항과 같이 ① 목적 외 사용 금지, ② 축산업자 명부 작성이 끝나는 즉시 파기 의무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11. 농어업경영정보 이용 근거 마련(안 제29조의3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개정안은 축산단체등(축산단체, 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으로 하여금 대의원의 선출과 해당 축산물의 축산업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축산물 축산업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및 사육 마릿수를 말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조의3(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① 축산단체등은 대의원의 선출과 해당 축산물의 축산업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중 해당 축산물 축산업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및 사육 마릿수를 말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축산단체등은 대의원 선출과 해당 축산물의 축산업자 명부 작성을 위한 자료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의원 선거 및 해당 축산물의 축산업자 명부 작성이 끝나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단체등에 제공된 개인정보의 파기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축산업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업자 현황 등의 정보 수집 및 제공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다. 검토 의견

현행법 제8조제1항³⁸⁾에 따라,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 등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등을 선출구역(이하 “선출구”라 한다)으로 하여 축산업자 중에서 대의원을 선출하고 있음.

대의원 선출은 동법 제8조제4항³⁹⁾에 따라, 선출구에 있는 축산업자의 과반수 또는 선출구의 가축 또는 축산물의 3/2 이상을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축산업자가 투표에 참석하여야 함.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⁴⁰⁾에 따라, 축산단체는 투표일 30

3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대의원의 선출 등) ①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 등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등을 선출구역(이하 “선출구”라 한다)으로 하여 축산업자 중에서 대의원을 선출한다. 이 경우 축산단체가 대의원의 선출에 지출한 비용은 의무자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39)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대의원의 선출 등) ④ 대의원의 선출은 선출구에 있는 축산업자의 과반수 또는 선출구의 가축 또는 축산물의 3분의 2 이상을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축산업자가 투표에 참여하여야 한다.

40)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대의원 후보자의 자격·등록 및 선거 등) ③ 축산단체는 투표일 30일 전까지 선거권자를 확정하고, 투표 일시 및 장소, 선거인명부 및 선출구별 대의원 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일 전까지 선거권자를 확정하고, 투표일 10일 전까지 선거인 명부 등을 공고하여야 하는바,

축산단체는 대의원 선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관련 축산업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사육 마릿수와 같은 개인정보가 필요함.

따라서, 원활한 대의원 선출 절차의 진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축산단체에 상기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개인정보 관리주체가 이러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⁴¹⁾

그런데, 현행법 상 상기 개인정보를 축산단체에 제공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미비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축산단체등이 대의원의 선출과 해당 축산물의 축산업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및 사육 마릿수를 말한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목적 및 범위

④ 축산단체는 투표일 10일 전까지 후보자 명부를 공고하여야 한다.

41)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11.3.29)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만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의 구체성·명확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임.⁴²⁾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현행법 제8조제1항⁴³⁾에 따라, 대의원 선출의 주체는 ‘축산단체’이므로, 안 제29조의3제1항에서 ‘축산단체등’으로 약칭하여 ‘개인정보 제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① 관리위원회, ② 수납기관은 개인정보의 제공 목적인 대의원 선출과 관련이 없음.

따라서, 축산업자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 목적과 관련이 없는 단체에까지 광범위하게 제공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 제공 대상에서 ① 관리위원회, ② 수납기관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둘째, 안 제29조의3제2항에서 축산단체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대의원 선거 및 해당 축산물의 축산업자 명부 작성이 끝나는 즉시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상기의 명부에도 축산업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사육두수가 기록되는바, 대의원 선거 종료 시 명부도 파기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42)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3)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대의원의 선출 등) ①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 등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등을 선출구역(이하 “선출구”라 한다)으로 하여 축산업자 중에서 대의원을 선출한다. 이 경우 축산단체가 대의원의 선출에 지출한 비용은 의무자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2. 개인정보 부정 사용에 대한 벌칙 및 관리부실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제33조 및 제34조)

가.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개정안은 안 제2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대의원 선출과 해당 축산물 축산업자 명부 작성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안 제2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사용 후 즉시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33조(벌칙)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벌칙) ① 제2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2. 제2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대의원 선출과 해당 축산물 축산업자 명부 작성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현행	개정안
제35조(과태료) ① (생략)	제3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한 날 또는 축산물을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1. 2. (현행과 같음)
2. 제1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축산업자로부터 받은 의무거출금을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한 날 또는 축산물을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신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6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 제21조제8항----- -----
<신설>	3의2. 제2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사용 후 즉시 파기하지 아니한 자
4.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부정 사용 및 관리부실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2) 한돈·계란·우유 자조금 관리위원회

개정안에서 동 법 규정 외 기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칙 강화는 불필요하다는 의견 제시함.

다. 검토 의견

개정안의 벌칙 및 과태료 신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33조1항에서는 안 제29조의2제1항⁴⁴⁾에 따라 통계등을 작성·관리하는 공무원 등이 같은 조 제3항⁴⁵⁾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44)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제2206676호) 제29조의2(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 및 축산업자 현황 등을 포함한 통계자료(이하 “통계등”이라 한다)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축산단체, 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이하 “축산단체등”이라 한다)에 관련 통계등을 제공할 수 있다.

4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제2206676호) ③ 제1항에 따라 통계등을 작성·관리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32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직무상 알게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안 제29조의2의 통계등이 축산업자별 사육 마릿수 등 축산업자 현황인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통계자료가 아닌,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자료인 것으로 보임.

따라서, 안 제33조제1항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임.

이와 관련한 유사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비밀을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입법례가 있음.

【 유사 입법례 】

구 분	개인정보보호법	국민건강보호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개정안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② 500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외 정보 목적 외 사용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따라서,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개정안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둘째, 안 제33조제2항제2호에서는 “제29조의3제2항⁴⁶⁾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대의원 선출과 해당 축산물 축산업자 명부 작성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안 제33조제2항제2호의 처벌수준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상향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또한,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안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축산업자 현황 등을 제공받은 축산단체에 대하여 ① 목적 외 사용 금지, ② 축산업자 명부 작성이 끝나는 즉시 파기 관련한 별도 의무를 규정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안 제35조제2항제3호의2의 “제2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사용 후 즉시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적정 수준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46)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제2206676호) 제29조의3(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축산단체등은 대의원 선출과 해당 축산물의 축산업자 명부 작성을 위한 자료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의원 선거 및 해당 축산물의 축산업자 명부 작성이 끝나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 유사 입법례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u> 를 부과한다. 4. 제2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u>파기하지 아니한 자</u>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u> 를 부과한다. 6.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기록을 <u>파기하지 아니한 자</u>
「항공보안법」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u> 를 부과한다. 3의2.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생체정보를 <u>파기하지 아니한 자</u>

넷째,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안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축산단체로 하여금 성과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성과 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성과 평가 실시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안 제31조의2제1항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섯째,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안 제18조제3항을 신설하여 중도매인 등이 의무거출금 대납 시 수납기관에 납부자 및 미납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안 제18조제3항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 1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위원 명단 및 운영 실적

□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위원 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당 연 직 (5)	정부(3)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김종구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강태수
		통계청	사회통계국장	서운주
	생산자대표(1)	농협경제지주	축산기획유통본부장	공형식
	공공기관(1)	축산물품질 평가원	원장	박병홍
위 촉 직 (10)	소비자단체 대표(1)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회장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	남인숙
	법률.경제.경영. 축산 분야 대학, 연구기관에서 7년이상 부교수 이상 등(4)	건국대학교	경제학과(위원장)	정경수
		건국대학교 식품유통공학과	교수	김민경
		전남대학교	교수	최혜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혜선
	생산자단체.유통 업계 대표 및 축산관련 전문가(5)	전국축협운영협의회	회장 (남양주축산농협조합장)	이덕우
		축산단체협의회	회장 (대한한돈협회장)	손세희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상무	이광림
		한국육가공협회	회장 (주)팜덕 대표)	고한주
		한국육류유통 수출협회	회장	김용철
		대한영양사협회	회장	송진선

□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회의실적

- 2024년 : 회의 미개최(안건 미발생)
- 2023년 : 육계 수급조절 소위원회 개최 1회('23.4.27.)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2025. 1. 24.) 제출

축단협, "정부 축산자조금 개편안 강행 강력대응 할 것"(전업농신문, 2023.09.07.)

축산관련단체협의회, 6일 정부 추진안 대응방안 논의

개편 강행시, 총 쫓기대회 추진·자조금 폐지도 검토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정부의 축산자조금 개편안과 관련해 축산 생산자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일방적 통행으로 추진할 경우 강경투쟁으로 맞서고 최악의 경우 자조금 거출 중단과 정부지원 거부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는 지난 6일 2023국제축산박람회가 개막한 대구 EXCO에서 생산자 단체 긴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축산자조금 법인화 추진 관련 대응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한우와 한돈, 낙농, 양계, 토종닭, 육계, 양봉 등 축산 단체장들은 그동안 정부가 자조금 관리위원회와 대의원 총회까지 승인된 사업계획을 승인 단계에서 임의 조정하고 승인도 지연시킨 것과 관련해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장들은 지난달 30일 농식품부가 생산자단체 의견 수렴과정에서 자조금의 기능에 정부가 해야 할 수급과 방역까지 포함시키고 자조금을 법인화 하려는 계획(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있으며 즉각 반발했다.

정부의 축산자조금 개편(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축산자조금의 수급조절 등 사업 기능을 강화해 기존 소비홍보 중심에서 수급조절과 방역, 환경 등을 신설하고 가격상승시기와 거출금 상향 논의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자조금 운영방식도 재정립 해 특수법인화 하고 명칭을 자조금관리원으로, 관리위원회를 이사회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축산단체는 자조금 설치권과 자조금관리원의 이사회 추천권만 가지며 거출과 운영 및 폐지는 모두 자조금관리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무엇보다 이사회 구성원 중 절반인 50%를 농식품부에서 추천한 이사로 구성하게끔 하고있어 생산자단체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한돈의 경우, **정부지원금은 12.4%에 불과한데도 전체 사업에 관한 과도한 개입을 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있음을 토로했다.**

이날 축산단체장들은 공통입장 성명을 내고 "축산자조금은 축산농가 스스로 거출한 기금으로 축산농가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영돼야 하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축산자조금 개편안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에서 이해 당사자와의 의견 조율없이 강제적으로 추진할 경우 제도 개편을 막기위한 집회와 저항시위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향후 농식품부 관련 세부 논의를 거쳐 만일 정부 강행안이 추진될 경우 축단협 차원 공동으로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의 원안대로 처리된다면 축단협은 9월중 국회앞 기자회견과 여야 국회의원 면담을 통한 축산단체 입장전달을 할 계획이다. **한돈의 경우 한발 더 나아가 자조금 정부보조금 수령을 거부하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순수한 자율적 거출기금 성격으로 운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돈협회는 자조금 운영에 관한 사전 농가 설문조사를 통해 70%의 동의를 얻어낸 상태라고 밝혔다.

축단협 김삼주 회장(한우협회장)은 "농식품부와 협의가 우선이겠지만 생산자 단체 의견의 존중없이 강행 추진할 경우 **전 축종 대상 대규모 총 쫓기대회를 비롯한 최후 수단으로 자조금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라며 "쫓기대회 이후에도 개편 강행 시 자조금 거출 중단 과 함께 자조금 자율성 확보를 위한 9월 정기국회와 농해수위 입법활동도 지속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계획 제출 두 달 넘었는데...정부 축산자조금 사업승인 '감감'(한국농어민신문, 2023.02.07.)

해마다 승인 늦어지면서 월 단위 우선승인 요청 애로

한우값 추락 등 대응 급한데 사업추진 차질 '불만 고조'

지난해는 6개월이나 지나 승인 올해도 이달 안에는 어려울 듯

큰 이슈 없이 차일피일 답답

올해도 정부의 축산 자조금 사업 승인이 미뤄지면서 사업 시행이 난항을 겪고 있다. 축산업계는 매년 되풀이되는 정부의 자조금 사업 승인 지연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처럼 한우가격 하락으로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등에 발 빠르게 대처하려면 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시행 등 축산자조금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해야 하지만 정부의 사업 승인 지연으로 축산물 가격·수급 안정 관련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축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②항에 따르면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공시)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11월 30일까지 각각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시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한우·한돈·우유 등 주요 축산 자조금은 2023년 예산 및 사업계획안을 각 관리위원회와 대의원총회를 거쳐 지난해 11월 30일경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 농식품부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하지만 2023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안을 제출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농식품부의 사업 승인 절차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올해 예산 및 사업계획안이 승인되지 않으면서 축종별 사무국은 한 달 단위로 우선사업 승인을 농식품부에 요청하고 있다.

축산 자조금 승인 지연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주요 축종인 한우·한돈·우유자조금 사업 승인은 5월경 이뤄졌다. 각 사무국에서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농식품부에 제출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축산업계는 당시 정부가 '자조금관리위원장과 축종별 생산자단체장은 겸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2022년도 축산자조금 예산운영지침' 개정을 마무리하려고 축산 자조금 승인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해석했다.

올해도 이 달 안에 2023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안이 승인될지 미지수다. 농식품부가 3월에 진행할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사업 승인을 요청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뜰이나 축산물 가격 폭락, 생산비 급등 등으로 축산 농가들의 경영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물 소비 촉진, 수급 안정 등에 활용되는 축산자조금 승인 지연은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늦추는 것은 물론 축산 자조금 사업 지연 등이 우려된다.

축산업계 A씨는 "농식품부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주겠다고 했지만 3월까지 우선사업승인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은 2월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별다른 이견이 없는데 자조금 승인이 왜 늦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월별로 우선사업승인 해도 사업비 승인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자조금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다. 작년처럼 늦게 승인되진 않겠지만 매년 정부 승인이 미뤄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정재환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품목별 담당자들이 자조금 사용 방안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예산 및 사업계획안에 정부가) 특별히 이견이 있는 등 그런 상황도 아니고 (정부가) 일부러 지연하는 것도 아니다. 품목마다 확정되는 대로 승인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참고 3

축산자조금 성과평가 관련 연구 결과 요약

축산자조금 성과평가 연구('21.2월, 건국대)
- 서로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9개 축산자조금을 일률적인 지표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세 개의 그룹을 나누어 각 그룹에 적합한 정성평가지표와 정량평가지표를 개발함 - 축산자조금 평가의 방향과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국내 축산자조금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고찰,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시, 축산선진국의 시사점, 국내 축산 자조금의 발전방향에 대해 축약하여 고찰하여 서술하였고, 이러한 내용과 논리적 연관성을 갖도록 평가체계를 개발하였음
자조금 현황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21.10월, 농경연)
- 국내 농축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국내 생산자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자조금의 역할을 강화하여 정부의 시장개입을 줄이고 생산자가 참여 및 주도하는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이에 자조금 정책의 기본방향을 자조금 조직 단계별 육성을 통한 생산자 참여형 농축산 정책 구조 확립으로 설정하고, 주요 과제를 1) 평가체계를 통한 자조금 거버넌스 역량 강화, 2) 수급(소비 및 공급) 안정 노력, 3) 조사와 연구 및 기타, 4) 내수 및 수출, 5) 제도개선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단기 및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였다. - 우선 자조금 조직을 농가거출금과 자조금 납부율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0~4단계), 품목별 특성에 따라서 수출형, 수입경쟁형, 내수중심형으로 구분하였다. 0단계는 자조금 설치 및 기반마련, 1단계는 자조금 사업 수행, 2단계는 사업 다각화, 3단계는 사업 고도화, 4단계는 품목 최상위 조직으로 단계별 거버넌스를 설정하고 주요 사업내용을 제시하였다. - 자조금 조직의 단계별 발전방안은 단기에 자조금 사업 기반 마련, 중기에 내수 중심형 또는 수출 주도형, 장기에 수급 관리형으로 구분하였으며, 내수 마케팅 경쟁력 강화 방안, 수출창구 단일화 방안, 단기~중장기 수급안정 관련 사업 시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 기존 농산 평가체계를 활용하되, 연구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 평가체계를 제시하였다. 단계별로 배점 비중을 달리하여 자조금 조직 육성 단계에 적합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평가에 따른 환류체계(매칭비율)를 설정하였으며, 환류체계는 정부 지원의 형평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저단계 우선 지원 방식을 채택하여 소규모(저단계) 품목의 육성을 독려하고자 하였다. -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1) 자조금 조성 및 조직 운영, 2) 사업 추진, 3) 평가 및 관리 부분의 3개 영역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자조금 거출, 농가 정보 수집, 미납부 농가에 대한 제재 방안, 운영비 상한 등에 관한 법적·행정적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다음으로 현재 자조금 사업 현황과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추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조금 조직의 품목 대표성 및 대의원의 대표성 확보 방안, 품목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방안 등 평가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2025. 1. 24.) 제출

축산자조금사업 정부 입맛대로...업계 '반발'

농식품부가 내놓은 축산자조금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두고 축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축산자조금 예산집행과 사업편성, 사업집행·결산 기준 등 항목을 포괄한 지침 개정안을 최근 확정하고 각 자조금단체에 배포했다. 지침은 자조금집행의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 농가거출금과 정부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보조금 매칭 기준 등 지침 세부 내용을 두고, 축산자조금 사업을 정부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소비홍보 사업에 대한 보조금 매칭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지침엔 단순 행사성 소비홍보 사업은 지양해야 하며, 공공성·사업 필요성 평가에 따라 정부보조금 매칭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는 정부보조금을 매칭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농식품부와 협의 아래 진행하는 수급조절·방역·필수 연구용역 사업 등엔 거출금의 100%를 초과해 보조금 매칭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한 자조금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지침 개정안을 배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소비홍보 사업 억제에 대한 반대 뜻을 표출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힘들여 생산한 축산물을 잘 판매하기 위해 농가 스스로 거출한 기금 용처를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자조금관리위원장과 축종별 생산자단체장 겸임 금지 원칙도 논란이다. 현행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축산자조금법)’은 위원장 선출을 자조금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할 뿐 겸임 금지 근거는 없는데, 농식품부가 향후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통해 겸임을 금지하도록 강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모돈이력제, 원유 가격 결정 체계 등 각자의 이슈를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과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이 각각 한돈자조금과 우유자조금 위원장직을 겸직하고 있어, 겸임 금지 조항이 두 단체 힘을 빼기 위한 방안이라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우·한돈은 각 300억원, 우유는 100억원을 웃돌 정도로 자조금 운용규모가 막대한데 생산자단체와 대표가 동일할 경우 운영상 투명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면서 “양 단체간 상호견제를 통해 회계관리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또 지침엔 농가 거출실적이 도출실적의 50% 미만일 경우 농가들의 자조금 거출·활용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정부보조금을 매칭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닭고기·달걀 등 거출률이 저조한 자조금단체에 대한 지원금액을 감액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가금생산자단체 관계자는 “닭고기·계란 자조금이 수년간 거출 부진을 겪은 원인엔 참여단체간 이견과 사무국 역량 부족 등 문제도 있지만,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역시 의무자조금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다”면서 “보조금이 삭감되면 자조금 사업추진에 큰 난항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농식품부가 최근 한우·한돈 등 자조금단체에 전달한 2022년 사업계획(안)을 두고도 거센 반발이 나온다. 의견수렴을 위해 농식품부가 자조금단체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이 뒤집히거나, 자조금 예산운용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추진 사항이 다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한 자조금 관계자는 “사업계획의 원안 승인을 위해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처

02)6788-5426
